

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’이 제정되었습니다.

안녕하세요. 이승민 변호사입니다.

2023. 6. 30.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”)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 시행일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.

이하에서는 **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입법 취지, 주요 내용 및 그 전망**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1. 입법 취지

최근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.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FTX 거래소 파산 사태 등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본시장법”)에 따라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공정거래행위(미공개중요정보 이용, 시세조종, 사기적부정거래)가 규율되고 있던 것과 달리,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는 미비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 발생시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이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가상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.

이에 국회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법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.

2.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

- 가)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(제1조).
- 나) 가상자산의 정의는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이른바 특금법)에 따르되,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(CBDC,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)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,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·이용자·가상자산시장을 정의함(제2조).
- 다)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,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(제3조 및 제4조).
- 라)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정책, 제도에 관한 사항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·운영

할 수 있도록 함(제5조).

- 마)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, 가상자산의 보관, 보험의 가입, 가상자산거래 기록의 생성·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6~9조).
- 바)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,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시 손해배상책임, 과징금 부과를 규정함(제10, 17조).
- 사) 사.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·출금 차단을 금지하고,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(제11, 12조).
- 아)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·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·조치 권한을 규정함(제13~15조).
- 자) 통화정책 수행 등을 위해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제16조).
- 차)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 과징금(이익/회피한 손실이 없거나,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40억원 이하)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제17조)
- 카)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(1년 이상의 유기징역,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~5배 벌금)을 규정하고,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자격정지, 벌금의 병과, 몰수·추징, 양벌규정을 규정함(제19~21조)
- 타) 타.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행정법규 등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(제22조).

3. 전망

국회는 법 시행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들로 하여금

- 1) 가상자산사업자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
- 2)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
- 3) 가상자산평가업/자문업/공시업 등 규율 체계
- 4)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
- 5) 사고발생시 입증책임전환 규정
- 6)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, 관련 개선방안
- 7) 자금세탁방지 위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제도 개선방안
- 8) 가상자산 유통량 및 발행량 통일 기준,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제한 관련 공시 및 내부통제 의무 부과 규정
- 9)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대통령령 등

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거래소 상장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 마련을 지원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이 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하느라 매우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.

본 법이 시행되고 나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나 절차가 늘어나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대통령령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.

또한,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, 수사, 처벌이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,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.

본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, 규제는 기존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및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바,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증권, 금융 및 가상자산 분야 비즈니스모델 검토, 운영 자문 및 형사소송 등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 ©2023 SEUM Law.

이승민 변호사

Partner

seungmin.lee@seumlaw.com